

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업무협력 합의서

- 사업명 :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구축
- 사업목표 : 기관별 해외진출 관련 자료의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
- 주관기관 : 산업자원부
- 책임운영기관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- 참가기관 : 해외건설협회

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(이하 '본 시스템'이라 한다)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 주관기관 및 책임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다.

제1조 (사업목표) 본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진출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해외진출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다.

제2조 (용어정의) 이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해외진출 관련 자료”라 함은 참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 중 해외 직접 투자 진출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국가·산업·투자환경·투자단계별 지식과 정보,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.
2. “전문가정보”라 함은 참가기관 내외부의 인물로서 해외진출과 관련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여 전문적인 해외진출 관련 자료를 생성 또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DB정보를 말한다.
3. “시스템 구축기관”이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그 위탁을 받아 구축 및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.

제3조 (사업내용) 본 시스템은 각 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자료를 통합한 DB를 구축하고, 해외진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, 전문가정보 등을 포함하여 해외진출 관련 범국가적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한다. 다만, 본 시스템은 수집된 정보의 유용성·활용성 등을 감안하여, 기타 관련 자료와 정보를 함께 수집하기로 하며,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진출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.

제4조 (사업수행) 각 참가기관은 통합DB의 구축에 필요한 해외진출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,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의 유지·운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담당한다.

제5조 (협의내용) 본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.

1) 자료수집 허가

- ① 참가기관은 당 기관이 보유한 해외진출 관련 자료가 웹사이트 상에서 일반에 공개된 자료일 경우 이를 본 시스템 구축기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.
- ② 참가기관은 ①의 경우 외에는 주관기관, 책임운영기관과의 상호 협의 하에 당 기관이 보유한 해외진출 관련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를 정하고, 이에 따라 당 기관의 보유자료를 본 시스템 구축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다.

2) 저작권 협의

- ① 참가기관은 본 시스템 구축기관이 당해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본 시스템에 등재하는 데 동의한다.
- ②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'BRICs Info'에 BRICs 동향정보, 연구자료, 전문가정보 등을 제공하는 참가기관은 당 정보를 본 시스템 구축기관이 수집하고, 본 시스템에 등재하는 데 동의한다.

3) 외부용역정보 공유

- ① 참가기관은 당 기관에서 발생하는 해외진출 관련 외부용역 정보를 본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에 최대한 협조하여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.
- ② 각 참가기관은 기 완료된 용역 자료를 온라인상 통합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한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.

4) 전문가정보 공유

본 시스템 구축기관은 표준화된 전문가정보 입력형식을 제공하고, 참가기관은 이 형식에 따라 보유 전문가정보를 제공한다.

5) 신규 정보 및 서비스 제공

- ① 본 협약의 발효일 이후 참가기관이 해외진출 관련 자료를 신규 생성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본 시스템 구축기관이 수집하여 본 시스템에 등재하는 데 동의한다.

② 본 시스템 구축기관이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진출 관련 자료 중 참가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규 생성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, 주관기관·책임운영기관·참가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라 미보유정보의 신규생성 담당기관을 선정하며, 해당 기관은 본 시스템 구축기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·생성하여 본 시스템에 등재하는 데 동의한다.

6) 담당자 선정

- ① 참가기관은 본 시스템 구축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관리 실무 담당자를 각각 지정한다.
- ② 외부 위탁을 통해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·운영할 경우, 내부 실무 담당자와 함께 외부 위탁업체의 담당자를 지정한다.
- ③ 내부 또는 외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참가기관은 변경사항을 본 시스템 구축기관에 공지한다.

7) 본 시스템 통합 DB의 활용

참가기관이 본 시스템 통합 DB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에 통합DB의 활용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주관기관·책임운영기관·참가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6조 (협의조정) 본 합의서의 협의조항에 변경이 필요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·책임운영기관·참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7조 (협약의 발효) 본 합의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. 주관기관, 책임운영기관, 참가기관은 본 합의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·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07 년 6 월 26 일

주관기관

책임운영기관

참가기관

산업자원부

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

해외건설협회



장 관 김 영 주

사 장 홍 기 회

회 장 이 용 후